



- 취약계층 주거위생개선을 위한 -

업무협약서

다우리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과 장애인기업 다우리(주)는 주거위생취약 주민들의 주거위생개선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김해지역 저소득가정 등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약기관 상호발전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2. 주거위생취약계층 주거 방역소독서비스 지원
3.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4. 기타 상호 발전과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한 사항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기관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양해각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취득한 경영상의 기밀 및 기타 주요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며, 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각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4월 13일

(재)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장애인기업 다우리(주)

관 장 허 영 배

대 표 권 우 현

허 영 배

권 우 현